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외 광역교통 환경변화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책기능과 업무수요 변경 반영을 위해 광역교통요금과의 명칭을 광역교통경제과로, 광역시설운영과의 명칭을 광역시설정책과로, 간선급행버스체계과의 명칭을 광역교통도로과로, 광역환승시설과를 광역환승과로 각각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교통요금과”를 “광역교통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시행”을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해제 및 광역교통특별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11호를 “권역별 광역교통축 지정 및 축별 광역교통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대도시권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항에 제15호에서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초광역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17. 탄소중립형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에서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정책의 총괄·조정

1의3.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노선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1의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14호 중 “친환경”을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대도시권 광역버스분야 이동약자 편의 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8. 대도시권 광역버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을 “광역교통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승정산 시스템 구축”을 “환승 요금 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요금의 요율·기준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7호 중 “통합·조정”을 “의 지정·변경 및 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사업구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대도시권 교통통계의 구축·관리·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도시권 광역 모빌리티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16.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MaaS)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설운영과·간선급행버스체계과 및 광역환승시설과”를 “광역시설정책과·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로 하고, 후단 중 “광역시설운영과장 및 광역환승시설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설운영과장”을 “광역시설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연차별 광역교통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광역교통시설의 운행계획·재원분담 등에 관한 갈등조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와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트램(노면전차), 트램-트레인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7의3.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18호 중 “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를 “광역철도”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 “기술개발”을 “기술의 연구개발 총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을 “광역교통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로·교통혼잡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를 “관리 및 광역도로·교통혼잡도로 건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로·교통혼잡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로·교통혼잡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자율주행 등 신교통체계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수소 등 친환경체계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한 광역·교통혼잡도로
망 구축 및 도입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환승시설과장”을 “광역환승과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 환승편의성 사전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광역교통정책국	1명 (고위나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2) 광역교통정책과	8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3) 광역버스과	8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2024년 3월 31일까지
4) 광역교통경제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5) 광역교통운영국	1명 (고위나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6) 광역교통도로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7) 광역환승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2024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① (생략)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광역교통요금과</u> ----- -----.	② ----- ----- <u>광역교통경제과</u> ----- -----.
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 <u>시행</u> <u><신 설></u>	5. ----- ----- <u>시행에 관한 사항</u> <u>5의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해제 및 광역교통특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u>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1. <u>권역별 광역교통축 지정 및 축별 광역교통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u>11의2. 대도시권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u>
12. ~ 14. (생략) <u><신 설></u>	12.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15. <u>초광역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u>
	16. <u>대도시권 범위 조정에 관한</u>

<신 설>

④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4. ~ 13. (생 략)

14. ---- 친환경-----

15. ----- 운영자-----

16. (생 략)

<신 설>

사항

17. 탄소중립형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④ -----
-----.

1. (현행과 같음)

1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정책
의 총괄·조정

1의3.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노선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1의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갈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3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회 운용에 관한 사항

4. ~ 13. (현행과 같음)

14. ---- 전기·수소버스 등 친
환경-----

15. ----- 운영자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16. (현행과 같음)

17. 대도시권 광역버스분야 이

<신 설>

⑤ 광역교통요금과장-----

-----.

1. ~ 3. (생 략)

4. -----

---- 환승 정산 시스템 구축-----

5. · 6. (생 략)

<신 설>

7. ----- 통합 · 조정

8. ---- 사업구역심의위원회 구
성 · 운영

9. · 10. (생 략)

<신 설>

동약자 편의 증진 관련 정책
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8. 대도시권 광역버스 통합 정
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광역교통경제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4. -----

----- 환승 요금 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

5. · 6. (현행과 같음)

6의2.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요금의 요율 ·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 지정 ·
변경 및 조정 등-----

8. ---- 택시운송사업 심의 · 조
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 10. (현행과 같음)

10의2.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
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
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
한 사항

11. · 12. (생략) <u><신설></u> 13. · 1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대도시권 교통통계의 구축·관리·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u> 13. · 14. (현행과 같음) <u>15. 대도시권 광역 모빌리티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u> <u>16.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u>17.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MaaS)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18.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① (생략) ② ----- <u>광역시설운영과 ·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및 광역환승시설과-----, 광역시설운영과장 및 광역환승시설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광역시설정책과 · 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③ <u>광역시설운영과장</u>----- -----. 1. · 2. (생 략) 3. <u>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 광 역도로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u> 4. <u>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의 수립 · 시행</u> 5. <u>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 광 역도로 관련 예산의 총괄 · 조 정</u> 6. ~ 1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8. <u>광역도로 · 혼잡도로 · 광역 철도</u>----- 19. (생 략) 20. ----- ----- <u>기술개발</u>----- ----- ④ <u>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u>----- -----	③ <u>광역시설정책과장</u>----- -----. 1. · 2. (현행과 같음) 3. <u>연차별 광역교통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 에 관한 사항</u> 4. <u>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 5. <u>광역교통시설의 운행계획 · 재원분담 등에 관한 갈등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6. ~ 17. (현행과 같음) 17의2. <u>트램(노면전차), 트램-트 레인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u> 17의3. <u>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 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의 수 립 · 운용에 관한 사항</u> 18. <u>광역철도</u>----- ----- 19. (현행과 같음) 20. ----- ----- <u>기술의 연구개발 총괄 및 중장기 계획 수립</u>----- ④ <u>광역교통도로과장</u>----- -----
---	--

1. <u>간선급행버스체계</u> ----- -----	1. <u>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로· 교통혼잡도로</u> ----- -----
2. <u>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u> - -----	2. <u>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u> - -----
3. ----- ---- <u>관리</u> -----	3. ----- ---- <u>관리 및 광역도로·교통혼 잡도로 건설</u>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u>간선급행버스체계</u> ----- -----	8. <u>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로· 교통혼잡도로</u> -----
9. <u>간선급행버스체계</u> ----- -----	9. <u>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로· 교통혼잡도로</u> ----- -----
10. <u>간선급행버스체계</u> ----- -----	10. <u>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 로·교통혼잡도로</u> ----- -----
11. <u>간선급행버스체계</u> ----- -----	11. <u>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 로·교통혼잡도로</u> -----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18. <u>간선급행버스체계</u> ----- -----	18. <u>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도 로·교통혼잡도로</u> ----- -----
<신 설>	19. <u>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자율주행 등 신교통체계 도입</u>

<u><신 설></u> <u><신 설></u> ⑤ <u>광역환승시설과장</u>----- -----. 1. ~ 14. (생 략) <u><신 설></u> 15. ~ 18.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0.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수소 등 친환경체계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1.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중 교통시설과 연계한 광역·교통 혼잡도로망 구축 및 도입에 관한 사항</u> ⑤ <u>광역환승과장</u>-----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u> 15. ~ 18. (현행과 같음) <u>1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u> <u>20. 환승편의성 사전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21. 환승센터 총괄계획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	--